

Yeosu Web Contents

2023년 12월 01일 05시 08분



목차

목차	2
여권안내	3
여권(여권, Passport)	3
여권발급 대상	3
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(여권법 제2조)	3
여권 신청	3
여수시 여권사무 대행기관	3
여권발급 절차	4
공통 구비서류	4
2008. 8. 25.부터 여권발급 대리신청 제도 폐지	4
전자여권 발급 수수료(58면 기준/현금 및 카드 결제 가능)	4
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(국제교류기여금 포함)	4

여권안내	교부	자주하는질문 ㄱ	민원서식 다운로드 ㄱ
국제운전면허증			



여권(☒☒, Passport)

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,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 합니다.(여권법 제2조)

여권발급 대상

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(여권법 제2조)

-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(여권법 제12조)
- 복수국적자
- ※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 (출입국관리법 제7조, 제94조)이 되며,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,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.

여권 신청

- 본인 직접 신청 원칙(여권법 제9조)
 - › 여권(여행증명서)의 발급,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,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
- 여권 신청인(본인) 확인 신분증
 - ›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(행정안전부 발행 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), 여권 등
- ※ 통신사 PASS 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분증으로 사용 불가
- ※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가능. 단,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

여수시 여권사무 대행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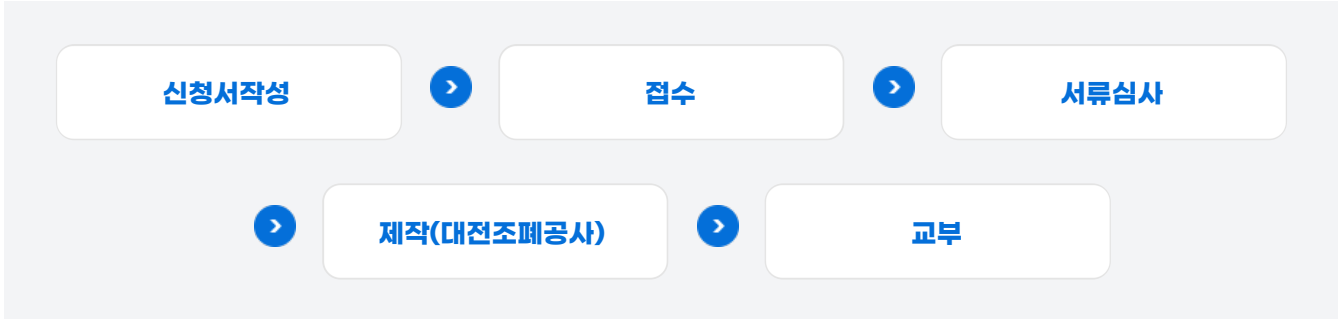
- 장 소 :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(여권 창구) [여수시 시청로 1]

근무시간: 평일 09:00 ~ 18:00 / 매주 화요일 09:00 ~ 13:00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- 근무시간 : 평일 09:00~18:00 / 매주 화요일 09:00~20:00
- ※ (토·일, 법정공휴일, 점심시간 12:00~13:00 휴무)
- 문의전화 : 061-659-3333 ~ 3336 / 659-3339

여권발급 절차



공통 구비서류

- 여권발급신청서 1부 (소정양식 민원실 비치)
 - ※ 검은색 펜으로 기재
-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(긴급여권 사진 2장)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유효한 운전면허증, 유효기간 남은 여권 등)
 - ※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
- 수수료(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가능[2009.11.23 부터])
- 구여권 (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-단수포함)
- 미성년자(만18세 미만자)의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
-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- 병역관계 서류(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-병역 미필자)
- 국적 확인 서류(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)

2008. 8. 25.부터 여권발급 대리신청 제도 폐지

18세 이상 성인 본인직접 신청 의무화됨 (가족, 여행사 대행불가)

- 18세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, 조부모 등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가능
 - ※ 단, 법정대리인(친권자) 신청 시 공통서류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 지참
-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친권자의 여권발급동의서(인감날인), 인감증명서, 신분증(사본 가능) 및 대리인 신분증
-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, 부득이한 질병이나 사고에 한하여 배우자, 부모, 형제 등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가능
-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(여권명의인 및 대리인),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

전자여권 발급 수수료(58면 기준/현금 및 카드 결제 가능)

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(국제교류기여금 포함)

--	--	--	--	--	--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여권종류	유효기간	여권발급수수료		국제표뉴기여금	합계	대상 및 참고사항	
복수여권	10년	58면	38,000원	15,000원	53,000원	성인 (만 18세 이상)	
		26면	35,000원	15,000원	50,000원		
	5년	58면	33,000원	12,000원	45,000원	만8세 이상 ~ 만18세 미만	
		26면	30,000원	12,000원	42,000원		
		58면	33,000원	-	33,000원	만8세 미만	
		26면	30,000원	-	30,000원		
	단수여권	1년 이내	15,000원		5,000원	20,000원	왕복 1회 (출국, 입국 각 1회)
	긴급여권	1년 이내	48,000원		5,000원	53,000원	국내긴급여권 발급기관 (도청, 광역시청 등 증빙서류 제출)
15,000원			5,000원	20,000원			
여행증명서		23,000원		2,000원	25,000원	스티커부착식	
남은 유효기간 부여여권 (58면, 26면 선택) 4)		58면	25,000원	-	25,000원	잔여기간 재발급	
		26면			25,000원		
여권사실증명	여권 발급기록 증명서		1,000원	-	1,000원	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	
	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						
	여권 사본 증명서						
	여권실효확인서						
	여권정보증명서						

신청여권조회

성인의 여권(만18세 이상)

미성년자의 여권(만18세 미만)

병역의무자의 여권발급

여권 사진규격 안내

Yeosu Web Contents

